

Chubb One-Day레저보험(5종)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보험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해 판매합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1일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으로 합니다.
- ②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기본	(자가용운전자용) 별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별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별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별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별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2,000만원
기본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500만원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기본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피해자 1인 기준)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①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 1,000만원 한도로 지급 ②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 2,000만원 한도로 지급 ③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로 지급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3,000만원
특약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주2)}	500만원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

부상등급	지급보험금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25만원
6급	75만원
7급	30만원
8급~11급	15만원
12급~14급	5만원

(2)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벌금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을 한도로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공통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산출 예시

(남자, 1일, 일시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자가용운전자용)별금	2,000만원	540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3,000만원	
특약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 보장	500만원	540원
합계			1,080원

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One-Day레저보험은 보험기간이 1일로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